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815호 2019. 9. 20.(금)

안내문

-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http://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	--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

입법예고

-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3호      3
-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9호      9

고 시

- ◎ 도로명주소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0호      18

공 고

-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60호      2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3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만료됨(2019.12.31)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제2조의 2)
  - (현행) 2019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3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 sugini@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 및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4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750명 → 751명 (+1)
- 집행기관의 정원 : 734명 → 735명 (+1)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총 계 : 750명 → 751명 (+1)
- 일반직 계 : 748명 → 749명 (+1)
- 6급 이하 계 : 700명 → 701명 (+1)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mailto: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0명” 을 “75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4명” 을 “735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b>750명</b>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734명</b></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b>751명</b>-----                      -----.</p> <p>1. ----- : <b>735명</b></p> <p>2. (현행과 같음)</p>																																																																																																																																																										
<p><b>[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구청장</th> <th>의회 사무국</th> <th>보감소</th> <th>문화 회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b>총 계</b></td> <td><b>750</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정무직 계</b></td> <td><b>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일반직 계</b></td> <td><b>748</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3</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42</td> <td>18</td> <td>2</td> <td>4</td> <td>1</td> <td>17</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b>700</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별정직 계</b></td> <td><b>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청장	의회 사무국	보감소	문화 회관	동	<b>총 계</b>	<b>750</b>						<b>정무직 계</b>	<b>1</b>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748</b>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b>700</b>			-			<b>별정직 계</b>	<b>1</b>			-			6급 상당이하 계	1			-			<p><b>[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구청장</th> <th>의회 사무국</th> <th>보감소</th> <th>문화 회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b>총 계</b></td> <td><b>75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정무직 계</b></td> <td><b>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일반직 계</b></td> <td><b>74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3</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42</td> <td>18</td> <td>2</td> <td>4</td> <td>1</td> <td>17</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b>70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별정직 계</b></td> <td><b>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청장	의회 사무국	보감소	문화 회관	동	<b>총 계</b>	<b>751</b>						<b>정무직 계</b>	<b>1</b>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749</b>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b>701</b>			-			<b>별정직 계</b>	<b>1</b>			-			6급 상당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청장	의회 사무국	보감소	문화 회관	동																																																																																																																																																					
<b>총 계</b>	<b>750</b>																																																																																																																																																										
<b>정무직 계</b>	<b>1</b>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748</b>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b>700</b>			-																																																																																																																																																							
<b>별정직 계</b>	<b>1</b>			-																																																																																																																																																							
6급 상당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청장	의회 사무국	보감소	문화 회관	동																																																																																																																																																					
<b>총 계</b>	<b>751</b>																																																																																																																																																										
<b>정무직 계</b>	<b>1</b>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749</b>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b>701</b>			-																																																																																																																																																							
<b>별정직 계</b>	<b>1</b>			-																																																																																																																																																							
6급 상당이하 계	1			-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총 정원 750명 → 751명 (증1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여 왕 규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 5. (생략)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⑤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작성대상)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0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도로명주소 부여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12-1 외 2건

소재지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1 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장산로 208 외 29건

소재지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변경일	도로명 변경사유
(별지2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60길 46-1

소재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1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지1)

## 도로명주소부여조서

구분	종전의 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행정동)
	동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일 (변경일)	부여사유 (변경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신청	평리동	718-76	북비산로	212-1	2019.08.28.	신축	2010.4.7.	북비산네거리에서 비산동을 지남	평리3동
신청	내당동	63-20	통학로	4	2019.08.28.	신축	2010.4.7.	기존 "통학길"을 "통학로"로 변경	내당1동
신청	평리동	1115-12	국채보상로60길	46-1	2019.09.09.	신축	2010.4.7.	국채보상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평리2동

## 도로명주소 폐지조서

소재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평리동 1115-12	국채보상로60길 46-1	2019.09.09.	건물 철거

(별지2)

## 도로명주소 변경조서

소재지				도로명변경사유
지번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중리동 905-9	국채보상로2길 11	장산로 23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8-1	국채보상로2길 13	장산로 230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8	국채보상로2길 17	장산로 22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9	국채보상로2길 19	장산로 224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9-5	국채보상로2길 19-1	장산로 22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9-6	국채보상로2길 21	장산로 220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19-7	국채보상로2길 27	장산로 21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921-29	국채보상로2길 29	장산로 21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중리동 1020-1	국채보상로2길 33	장산로 20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55	와룡로87길 58	장산로 28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282	와룡로87길 60	장산로 28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281	와룡로87길 62	장산로 290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54	와룡로87길 64	장산로 29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53	와룡로87길 66	장산로 294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5-52	와룡로87길 68	장산로 29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23	와룡로87길 72	장산로 300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22	와룡로87길 74	장산로 304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07	와룡로87길 80	장산로 30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29	와룡로87길 86	장산로 314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40	와룡로87길 88	장산로 31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24	와룡로87길 88-1	장산로 316-1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41	와룡로87길 88-2	장산로 316-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16	와룡로87길 88-3	장산로 316-3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30	와룡로87길 88-5	장산로 316-5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17	와룡로87길 90	장산로 31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36	와룡로87길 92	장산로 322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226	와룡로87길 96	장산로 324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69	와룡로87길 96-1	장산로 32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565	와룡로87길 98	장산로 328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이현동 42-648	와룡로87길 106	장산로 336	2019.9.20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60호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1. 사업개요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2·3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864-6번지 일원
  - 면 적 : 18,334㎡
  - 사업시행자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강덕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76-16번지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07. 02. 08.
- 라. 폐지사유 : 2007. 02. 08.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자 함.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 9. 20. ~ 2019. 10. 4.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3), 내당2·3동행정복지센터

3. 의견 제출

가. 대 상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이해관계자 등

나. 제출방법 :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구청 건축주택과로 서면 제출